

제2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19호 관련)

2021. 12.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08~18:5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272호, 제278호~제289호)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19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가 보충의견이라는 PPT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을 설명서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검사국은 집합투자규약은 설명서이므로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5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설명서로 교부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음. 이번 보충의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실무답변을 정리한 소비자보호법 은행권 Q&A를 보면 질문으로 펀드판매시 제공에 필요한 계약서류에 집합투자규약도 제공대상인지에 관해서 금융위원회 실무답변으로 '운용사와 수탁사 간의 계약인 집합투자규약은 제공 불필요'라고 하고 있음. 금소법 제23조는 펀드판매시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는 그 계약서류로 '1. 금융상품의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의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합투자규약은 여기에 제공해야 할 계약서류. 즉, 설명서에도 해당하지 않고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판매사가 집합투자규약을 설명서로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은 ■■ ■■ 펀드가 판매되었던 20xx년에도 그렇고 현 시점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이나 금소법상 교부의무 대상이 되는 설명서로 보기 어려움. 두 번째로 상품제안서가 투자설명사항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임. 이에 대해 검사국은 상품제안서에는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에 있어 은행은 ■■ ■■ 펀드는 투자대상의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이고 투자전략으로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품으로 상품제안서는 이러한 ■■ ■■ 펀드의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함. 반면 검사국은 ■■ ■■ 펀드는 투자대상이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외에도 집합투자규약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ETF, 장외파생상품계약, 주식스왑, FX거래, 해외선물거래, 메자닌 등도 투자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투자전략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사국 주장과는 달리 ■■ ■■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이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품임. 그리고 상품제안서는 이러한 투자설명사항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음. 최근 20xx년 xx월x일 선고된 ○○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 역시 ■■ ■■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판단하였음. 판결문을 읽어보면 ■■ ■■ 펀드의 구조에 대해서 ♣♣ 자산운용의 ■■ ■■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해외 무

역매출채권. 즉, 수출업체(Seller)인 ○○○社가 수입업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 ■■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해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임을 인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전제로 유용된 일부 투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실제로 무역매출채권에 투자되었다고 판시하며 ■■ ■■ 펀드는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상품제안서 내용과도 일치하고 은행이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치함. ○○ ○○○역시 앞서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 ■■ 펀드의 투자대상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였음. 여기 판결문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에서 피고인이 바로 ○○○로 ○○의 ○○○은 ○○○社의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 ■■ 펀드를 모집하였다, 실제로 ■■ ■■ 펀드는 ○○○社의 무역매출채권에 투자되었다, ■■ ■■ 펀드를 모집할 당시 그 투자금으로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역시 ■■ ■■ 펀드는 ○○○社의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이렇듯 법원도 그리고 ○○○도 ■■ ■■ 펀드의 투자대상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임을 인정하고 있음. 투자전략 역시 상품제안서 기재와 같이 ■■ ■■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펀드임. ♣♣자산운용은 ■■ ■■ 펀드 위험등급을 3등급으로 정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였음. 금융감독원 위험등급 분류기준표에서 알 수 있듯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은 매우 높은 위험으로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3등급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임. ♣♣자산운용은 ■■ ■■

펀드에 대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으로 설정하고 이에 위험등급 3등급을 부여한 것임. ■■ ■■ 펀드는 투자대상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이고 투자전략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임. 이러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은 상품제안서 내용과 일치함. 두 번째 사항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품제안서는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충분히 기재하고 있음. 은행은 ■■ ■■ 펀드의 실질에 부합하는 상품제안서로 ■■ ■■ 펀드를 설명하고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였음.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품제안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음. 세 번째 사항으로 이 사건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집합투자규약 제16조를 ■■ ■■ 펀드 실질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정합성 검증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것임. 검사국의 지적은 상품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 제16조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음. 그런데 ■■ ■■ 펀드의 실질에 부합하는 상품제안서로 설명하고 상품제안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설명서 교부의무 이행은 완료되었음. 여기에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음. 오히려 집합투자규약 제16조에 따라 ■■ ■■ 펀드가 주식스왑, 장외파생상품, ETF 등에도 투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이는 ■■ ■■ 펀드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설명임. 결론은 이 사건은 설명서 교부의무가 문제되는 영역이 아니라 집합투자규약을 ■■ ■■ 펀드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정합성 검증의무가 문제되는 영역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합투자규약이 상품제안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는지는 원래 공모펀드에 있어 신탁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던 의무였음. 그런데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

로 신탁업자의 정합성 검증의무가 면제되면서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 측면이 있음. 이에 법에서 면제한 신탁업자의 의무를 부활시키는 대신 2020년 7월29일 행정지도로 판매회사에게 행정지도 이후 발급하는 설명자료부터 양자의 정합성을 점검하도록 하였음. 앞서 본 행정지도 이후 2021년 10월21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해 새롭게 판매회사에게 정합성 검증의무가 법적인무로 부과되기 시작했음. 세 번째 사항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행은 ■■ ■■ 펀드의 실질에 맞는 ■■ ■■ 펀드 상품제안서를 교부함으로써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음. 본건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닌 것임. 이 사건은 2021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새롭게 판매회사에게 부과된 정합성 검증의무에 관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지금까지는 검사국의 주장에 대해 저희의 반박 주장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먼저, 집합투자규약이 은행의 가입신청서류상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약관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 펀드 가입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투자자와 은행임. 그리고 은행이 투자자와의 펀드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는 수익증권 저축약관이 있음. 은행의 가입신청서류상 약관은 바로 이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의미함. 반면, 집합투자규약은 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은행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 운용사와 신탁업자임. 펀드 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이렇듯 약관의 개념상 집합투자규약은 투자자와 은행 사이의 약관이 될

수 없음. 펀드 판매 절차를 보더라도 은행이 가입신청서류 상 약관이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음. 펀드판매 과정에서 1단계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다음 2단계로 투자자에게 투자자 정보 분석 결과표를 교부함. 이때 뒷면에 수익증권 저축약관이 인쇄되어 있어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함께 교부하게 됨. 3단계로 투자자 위험등급에 부합하는 펀드를 선정하고 4단계로 상품제안서에 따른 상품을 설명한 다음 상품제안서를 교부함. 5단계로 약관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작성하고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러한 펀드판매 절차에서 투자자가 교부 받은 약관은 2단계에서 교부받았던 수익증권 저축약관임.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의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임. 이에 대해 집합투자규약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상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런데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는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심사와는 무관함. 과태료 제재 대상도 아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을 기재하고 있고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심사와 별개의 심사라는 점 역시 명확히 기재하고 있음. 요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약관으로 보고 심사하는지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2021년 7월14일자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음. 네 번째 사항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합투자규약은 은행의 가입신청

서류상 약관이 아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의 약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약관으로 보는지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함. 다섯 번째 사항으로 내규 위반을 이유로 행정법규 위반 제재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과태료 부과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임. 따라서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제재를 할 수는 없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2016년 보도자료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여섯 번째 사항으로 자본시장법상 상품설명서 작성 주체, 사전심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공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작성 주체를 자산운용사로 특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나 舊금투업 규정상 설명서 작성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설명서를 제안서 등 명칭 불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사가 설명서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음. 이에 실무는 공모펀드에 대해서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를 작성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의를 하는 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 몇 가지 예를 보면 ■■ ■■ 펀드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자산운용, ○○○○○자산운용 등 모든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음. 실무는 확고하게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를 작성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의를 해왔음.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사모펀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산운용사가 설

명자료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매회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고 있음. 판시 내용을 보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다. 판매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에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라고 판시하고 있음. 판매대상은 사모펀드이므로 여기에서 투자설명서는 사모펀드의 설명서를 의미함. 이렇듯 대법원도 사모펀드에서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임. 앞서 보았던 금융감독원의 2020년 7월29일자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를 보시면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판매사의 판매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설명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운용사가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전제로 행정지도를 한 2020년 7월29일 이후 설명자료부터 판매사에게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사전검증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여섯 번째 사항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 작성 주체를 자산운용사로 규정하고 있음.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설명서 작성 주체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산운용사가 설명서의 작성주체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규정이 있음. 그리고 공모펀드의 투자설명서와 사모펀드의 설명서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이에 실무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를 작성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

시인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확고한 관행이었음. 대법원 역시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매 회사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역시 자산운용사가 설명서를 작성하는 관행 하에 행정지도를 하였음. 이처럼 사모펀드의 설명서 작성 주체는 자산운용사도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에 따라 사전심의 주체도 자산운용사가 설명을 작성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마지막 일곱 번째 사항으로 은행이 ■■ ■■ 펀드판매 시 검토한 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 ■■ 펀드는 상품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상품으로 은행의 ■■ ■■ 펀드 출시에 앞서 ♣♣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명확히 이해하고 판매사로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제안서 내용을 확인하였음. 은행은 ■■ ■■ 펀드 판매에 앞서 ○○○社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타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경험이 있었고, 이후 ♣♣과의 2차 미팅 자리에서 ♣♣자산운용으로부터 직접 ■■ ■■ 펀드의 투자대상은 신용보험 가입된 매출채권이고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자체적으로 상품제안서상에 보험사에 관한 사항과 매출채권의 셀러(seller)인 ○○○社에 대해 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확인했음. ■■ ■■ 펀드 출시 전 자체적으로 확인했던 ○○○社에 대한 은행 싱가포르 지점 의견서를 첨부하였음. 은행 자체 분석을 통해 ■■ ■■ 펀드에서 중요한 매출채권의 셀러(seller)인 ○○○社의 신용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한 것임. 결론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은행은 ■■ ■■ 펀드에 대해 정확한 투자설명 사항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교부함으로써 설명서 교부의

무를 이행하였음. 검사국은 은행이 집합투자규약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하나, 집합투자규약 미교부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의율할 법적근거가 없음. 이와 같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신한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을 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 ■■ 펀드 같은 경우에도 x호부터 xx호까지 있는데 x호부터 xx호는 배부를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x호부터 x호의 집합투자규약이 배부가 안 되었음. 왜 같은 ■■ ■■ 펀드에서도 x호부터 xx호까지는 배부를 했고, x호부터 x호까지는 배부를 안 하셨는지?

▶ (진술인) 집합투자규약 배부가 필수사항이라는 점이 저희 실무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각각의 실무자 별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교부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관되게 교부 내지는 미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품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혹은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달랐던 부분임.

- (위원) ■■ ■■ 펀드 x호 같은 경우를 보면 상품제안서에 맨 하단에 “해당 수익증권 매입 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계약서를 읽어보시어 수익증권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라는 문구가 있음. 그런데 집합투자규약을 배부 안 해주셨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탁계약서를 어디에서 구해서 읽어봐야 하는 것인지?

▶ (진술인) 상품제안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한 문구는 모든 ■■ ■■ 펀드에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문구라고 먼저 말씀드릴림. 그다음에 저희가 의무교부사항이 아니지만 투자자가 요청하거나 혹은 PB팀장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필요한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담당자마다 업무스타일이 달랐다는 부분이 이런 것임. 영업점에서 이러한 집합투자규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담당자는 실제로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경우도 있고, 혹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신탁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건건이 제공하기도 하였음.

○ (위원) 운용사와 판매사 간에 만들어진 상품제안서와 운용사와 신탁사 간에 만들어진 집합투자규약과 그 내용이 상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판매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었다고 보시는지?

▶ (진술인) 먼저, 상품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이 상이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증했다 했음. 검증하면서 ♣♣ 자산운용 측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 상품은 ○○○社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맞느냐,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했음. 그래

서 그에 따라서 운용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레버리지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외 없이 사모펀드의 모든 집합투자규약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두고 있음. 표준집합투자규약의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음. 반면에 실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제안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제안서에 레버리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판매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품제안서에 레버리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당연히 집합투자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를 했고 ♣♣자산운용 역시 그렇게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임. 실제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를 보시면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일반적인 부동산자화 되어 있는 문구들이 쪽나열되어 있음. 저희들이 보기에 ♣♣자산운용 측에서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 ■■ 펀드의 특수성 문구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집합투자규약을 작성하다 보니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음.

- (위원) 표준약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집합투자규약도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를 하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집합투자규약을 보면 거의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음.

- (위원) 집합투자규약을 제공 안 했다고 해서 제재 받는 것이 맞느냐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다 시피 집합투자규약을 제공 안 해서 제재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제안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니 중요한 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임.
- ▶ (진술인)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원래 최초의 사전 통지서에는 '설명서인 집합투자규약'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 이후에 제재심 절차나 증선위 절차에서 금감원 검사국에서 명확하게 '설명서인 집합투자규약'이라는 부분은 철회한다는 표현을 안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한 반박도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집합투자규약은 제공이 불필요하다.”, “운용사와 수탁사 간의 계약인 집합투자규약은 제공이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금융위 질의시 은행연합회가 첨부한 내용을 보면 밑의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대리인께서 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음. ‘※집합투자규약의 내용 중 주요 사항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니까 집합투자규약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소법 은행권 Q&A의 전제는 이미 집합투자규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들이 투자설명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 ■■ 펀드 상품제안서에 중요한 투자설명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진술 중 두 번째 쟁점사항으로 말씀드렸음.

-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도 약관에 대한 양쪽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랐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consensus)가 있을 것 같은데 대리인이 생각하는 약관과 금감원이 생각하고 있는 약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여서 굉장히 의아하고 놀라기도 했음. 지금 대리인들께서는 약관이 집합투자규약이 아니라 수익증권 저축약관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금감원 측에서는 집합투자규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저는 대리인께서 작성한 PPT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증권 저축약관이라고 확신을 했으나, 금감원이 제출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음. '집합투자 상품 신규 가입 신청서(해외 겸용)'에 보면 '본인은 집합투자기구 약관 및 신한은행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 ▶ (진술인)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말씀드리겠음. 우선, 이 신규가입신청서상의 약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규상의 약관이 무엇인지는 결국 내규를 위반했느냐의 문제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규 위반을 가지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에서 확고하게 정한 기준이고 이 약관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약관에 대한 설명은 개별 문구가 아니고 결국 이 문구를 작성한 당사자 간 이 약관을 무엇으로 봤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펀드 판매절차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는 이 약관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투자자 정보 결과 분석표를 교부하면서 그 뒷면에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교부했었고,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상에 약관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으면서 이 약관이라는 문구가 계속 있는데 정작 신규가입신청서에는 약관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담당자가 약관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는 저희 담당자의 확인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약관이라는 문구가 어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펀드판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보고 사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2016년에 삽입한 문구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미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위원) 대리인께서는 이 약관에 대한 내용은 내규상의 규약이라고 해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펀드 가입 고객에게는 집합투자규약과 수익증권저축약관의 적용 및 제공됨’ 이 내용을 쪽 보면 약관의 적용 및 제공이라고 해서 투자자 유의사항, 간이투자설명서, 사모상품의 경우 약관 및 제안서라고 해서 약관이라는 것이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약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투자상품부 메신저 내용도 제시를 했는데 판매하신 분들께서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신탁서=약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신탁계약서와 약관을 동일시 여기는 것이 있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먼저, 방금 말씀하신 실무자 분들은 약관이라는 표현과 규약이라는 표현의 유사성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규약이 약관이 되는 것은 아님. 방금 말씀하신 수신업무 기준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약관의 적용 및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문구를 읽어보시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은 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과 수익증권저축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적용을 받게 되며, 또 그다음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요컨대 이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적용에 관한 규정이지, 제공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 (진술인)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투협 규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해서 설명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고, 지금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그러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임. 그런데 그 설명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금투협 규정 2-5조1항을 보면, 설명서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등에 대해서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 지금 말씀하신 약관은 이러한 투자설명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다른 내용임.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 지침(guideline)에서도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인지는 설명서 교부의무를 포함해서 자본시장법상 제

제대상이 되는 것인지와는 별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 또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만약 약관인데도 뭔가 이에 대해 미흡했다면 사법상 효과에 있는 것에 불과함. 계약 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거나 그런 사법상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 (위원) 상품설명서 작성 주체는 운용사라고 주장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투협 규정상으로는 작성 주체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작성 주체는 판매사도 될 수 있고 운용사도 될 수 있지만, '제안서 명칭 불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운용사도 작성할 수 있고 운용사가 작성했다면 그 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확한 입장임.

○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상품설명서를 판매사가 작성했으면 판매사의 책임인 것이고 상품설명서를 운용사가 작성했으면 운용사가 책임의 주체라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상품 제안서를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의 준법감시인이 사전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이 펀드가 매출채권 이외에 메자닌이라든가 등등 상품제안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집합투자규약에 언급이 되어 있는 다른 상품에 투자가 되었음. 그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 (진술인) 저희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함.

- (위원) 법률상(legally) 불법인지 아니면 어떤 신뢰에 대한 위반인 것인지? 매출채권 이외에 다른 상품에 투자한 것 그 하나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집합투자규약에는 맞는 투자 아닌지?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음. 설령 집합투자규약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설명하는 설명자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품제안서입니다만 고객에 설명한 내용과 달리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 운용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64조에도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보고자)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이 운용사를 구속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 물론 상품제안서가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되고 그것만이 유일한 제안서 또는 설명서라고 자산운용사가 이를 단정하고 판매사를 속였다거나 기망하였다면 그 자체로 운용사의 불법 운용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집합투자규약 내의 행위로 이것은 적법한 운용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 선례나 저희의 태도임.

- (위원) 지난번에 은행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xx년에 판매한 사모펀드 xxx건 중 xxx건이 실제로 집합투자규약과 상품제안서가 다르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음.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불일치 내용이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음.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레버리지나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이외에 투자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차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집합투자규약에 표준화된 문구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금감원 자료에는 나와 있음. 이 부분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집합투자규약이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라는 신탁업자와 운용사 간의 체결계약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함. 수익자 총회에 관한 사항, 권리의무와 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운용 감시를 행하고 있는 신탁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난 이후부터는 운용재산의 범위 내지는 투자전략 등을 담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모든 집합투자규약이 조금씩 다름. 이는 추구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전략이나 운영구조가 다르기 때문임. 그 부분은 다 다르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품제안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담거나 아니면 제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임.

○ (위원) 그런데 진술인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투자대상, 투자전략이 상품제안서와 차이 나는 부분이 거의 표준화된 문구다, 대다수 집합투자규약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투자대상, 투자전략을 상품제안서에서 안 담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상품에 있어서 집합투자규약과 제안서의 차이, 그 차이와 이번 건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금감원은 이 내용을 상품제안서에 안 담았기 때문에 이 상품제안서는 투자설명서로서 금투협 규정 제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개별성이 있는 내용인지를 제가 질문 드린 것임.

- (보고자) 이 건과 관련해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투자대상 자산이 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다를 수밖에 없음. 매출채권 외에 다른 자산은 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결국 이 상품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안전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문제는 신용보험으로 보호(cover)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고 투자대상 자산에 신용보험으로 보호(cover)되지 않는 자산이 있음을 미리 명기해서 알려줬어야만, 또 그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위험으로 적시했어야만 이 상품은 온전한 설명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음.

▶ (진술인)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 오가고 있는데 집합투자규약은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다보니 대동소이(大同小異)함. 다만, 예외적으로 바로 이런 투자대상이나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상품제안서는 거의 새롭게 작성하는 반면에 집합투자규약의 경우에는 거의 표준화 되어 있는 내용에 일부 특수성을 집어넣는 방식이 되어 있음. 그래서 사실 그 투자대상이나 투자전략과 관련해서는 서로 삽입하는 내용과 표준약관의 내용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예컨대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집합투자규약에는 다 들어가 있음.

○ (위원) 레버리지는 표준화된 문구로서 집합투자규약에 거의 모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 (보고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모두 레버리지가 허용되어 있음.

○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표준화된 문구로 볼 수 있겠음.

- (보고자) 다만,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따라서 3억 원 이상인 경우는 400% 이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00% 이내만 운용할 수 있는 차이만 있을 뿐, 레버리지는 사모펀드에서 모두 가능한 전략수단임.

○ (위원) 이 건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었는지?

▶ (진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제안서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임. 또

하나, 지금 이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전략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자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음. 집합투자규약에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펀드의 특수성 때문에 삽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일반화된 모든 집합투자규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또 쓰고 있음.

- (보고자) 투자대상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 채권이 뭐를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다름. 채권형 같은 경우는 발행인의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세분화 되어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제한 같은 것들이 다 걸려 있음. 이 건도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집합투자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상에는 그 외적인 요소들도 투자위험으로 당연히 적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저희가 (주)신한은행에 문제를 삼은 것은 신용보험 매출채권만을 담는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판매에 유리한 점(selling point)으로 강조하다보니까 투자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그에 기반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지, (주)신한은행이 이것을 알고서도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정합성 검증의무가 아까 없다고 했는데 정합성 검증의무가 없으면 당연히 절차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판단으로 안 준 것이고, 정합성 검증의무를 자기들이 수행했다는 것임. 저희는 그런 부분이 (주)신한은행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음.

- ▶ (진술인) 이 주된 투자전략이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제안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

나라 집합투자규약에도 되어 있음. 둘 사이의 차이점은 집합투자규약에는 거의 표준화된 양식에 집어넣다보니 둘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지만, 상품제안서에는 '상황에 따라 유동자산 운용을 위해 국내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0~30% 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이 펀드는 6개월마다 매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인데 펀드의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6개월 만기가 돌아오면 롤오버(roll over)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유희자금(idle money)이 발생하는데 그 유희자금(idle money)을 위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내용이 상품 제안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음.

- (위원) 유희자금(idle money) 같은 경우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집합투자규약과 상품제안서 어느 것이 먼저 작성이 되는지?

▶ (진술인) 저희가 그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구조부터 먼저 짜고 그 구조에 맞춰서 상품제안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표준화된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문구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상품제안서를 보면 ‘본 자료는 판매회사 임직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고객에게 수익증권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해당 수익증권 매입 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계약서를 읽어보시어 수익증권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용사에서 투자자 유의사항에 이 문구를 집어 넣었음. 이런 경우에는 판매사에 제공되는 상품제안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 ▶ (진술인) 상품제안서는 사모펀드의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핵심설명자료임. 다만, 투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들은 다른 ■■ ■■ 펀드에도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문구이고, 아마도 다른 상품제안서에도 이런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실질은 해당되는 투자제안서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사항들을 고객에게 다 설명하고, 해당되는 자료를 설명서로 교부하고 있음.

- (위원) 이 상품제안서는 일반적인 투자설명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투자자 유의사항 문구는 일반적으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금감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음. ‘신한은행이 ‘xx.x월 출시하였던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xx호’의 경우 운용사가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서로 교부될 것을 감안하여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제안서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음.

- ▶ (진술인) 상품제안서는 '사내한'으로 찍혀있는 상품제안서가 있고 '행내한'이라는 부분이 지워진 상품제안서도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상품제안서들은 '사내한'이라고 찍혀져서 나오는 상품제안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투자자 유의사항 역시 판매회사 임직원 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유의사항 문구가 있음. 몇몇 펀드들의 경우에는 '사내한'이라는 문구 없이 작성된 제안서도 물론 있음.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고, 실질적인 상품제안서에 담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사항들은 다르지 않음.

- (위원) 상품제안서라는 것이 △△△△△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설명서로 교부될 것을 감안해서 작성된 상품제안서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투자설명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판매사, 즉, 신한은행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심사번호를 기재하는 양식도 마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만약 이런 투자설명서로 교부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판매사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공된 상품제안서는 투자설명서로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판매사 사내 목적으로 사용될 상품제안서와 투자설명서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제안서는 법적이든 실질적이든 차이가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 (진술인) '판매사 사내한'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설명서로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 '판매사 사내한'을 찍느냐 안 찍느냐는 운용사마다 찍는 경우

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음. 또한, '판매사 사내한'이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그 해당 판매사, 예를 들면 (주)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판매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하세요.'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모두진술에서 말씀드린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판매사 사내한'이라고 적혀 있기도 함.

- (위원) 진술인께서 모두진술하신 자료에 '판매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에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음. 이것에 비추어서 금감원 자료를 보면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용사에서 판매사에 제공된 상품제안서에 '판매사 사내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용에 있어서 유의사항 문구가 들어가 있음. 그러니까 이 상품제안서가 온전하게 투자설명서로 대체하기에는 집합투자규약도 살펴보고 유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문구가 진술인께서는 표준문구이고 상시 들어가는 문구라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그 문구가 들어가 있음. 그리고 상품제안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음.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이것과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음. '단지,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음. 그러니까 판매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 (진술인) 두 판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 하나는 상품 제안서의 내용이, 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격이고, 금감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판례는 설명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임.

- (위원) ♣♣ 자산운용에서 제시한 상품제안서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투자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완전한 상품제안서인지?

- ▶ (진술인) 이 사안의 쟁점은 금감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상품 제안서가 투자대상 자산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투자전략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저희는 이것이 ■■ ■■ 펀드 실질에 부합하게 제대로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교부를 했던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자산운용도 당연히 저희가 상품제안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희에게 주었던 것임. 이 설명자료는 고객에게 교부된다는 관행은 금감원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임.

- (위원) “당연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는 아닌 듯 함. 투자자 유의사항 문구를 보면 이것은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제안서로 검토(review)가 된 것이지 투자설명서로 준법 감시인의 검토(review)가 되지 않은 것 같음.

▶ (진술인) 본 사안의 경우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자산운용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이 상품제안서를 교부 하기도 했음. 즉, 이것을 투자설명서로서 ♣♣자산운용이 교부한 사례도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